

공동자원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에 따른 관리 상태*

송정희·*최현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과 관리 상태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제주시 공동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마을 공동자원 중 최근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신당의 관리 현황을 소유 유형에 따라 조사했다. 소유 유형을 국가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마을 소유, 기업 소유, 개인 소유,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개인 소유의 신당이 95개소, 국가 소유의 신당이 28개소,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북제주군) 소유의 신당이 20개소, 마을(새마을회) 소유의 신당이 20개소, 기업 소유의 신당이 3개소, 주소가 없거나 등기가 없는 신당이 26개소(해변 10, GPS오류 10, 기타 6)로 나타났다. 주소나 등기가 없는 유형은 간척지이거나 해변인 경우, 2008년 조사 시 GPS의 오류로 인한 주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전지역이거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약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마을에 소유된 대부분의 신당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국가, 자치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속한 신당은 10개 중 2개가 개발사업 등을 위해 파괴되었다. 제주 전역의 신당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주시가 신당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당을 마을에 귀속시키고 마을이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머리말

공동자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최현과 김선필은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공한 사례들을 제시했다.¹⁾ 이를 통해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연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다. 공동자원의 관리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는 공동자원의 소유 방식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이다.²⁾ 이 논쟁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마을의 공동자원인 신당의 관리 상태를 소유 방식에 따라 조사했다.

이노우에는 소유권보다 공동자원의 관리 주체와 실태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다.³⁾ 하지만 아마시타, 윤순진·차준희, 최현 외 등 다양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권이 관리 주체나 실태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⁴⁾ 곧 관리주체가 공동자원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체가 공동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공동자원이 팔려나가고 파괴되는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자원이 사라지는 경우 그것이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자원이었다면,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연대를 크게 약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을이 공동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

1) 최현·김선필,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공간과사회』 26(4), 2016; 최현, 「선홀리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ECO』 제19권 2호, 2017.

2)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3) 위의 책.

4) 아마시타 우타코, 「소유형태로부터 본 입회임야의 현상」, 『공동자원론의 도전』,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경인문화사, 2014; 윤순진·차준희,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사회』 19(2), 2009;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1: 땅, 물, 바람』, 진인진, 2016;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2: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진인진, 2016.

이 대체로 우세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신당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공하고 신당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마을 충유를 제안하고자 한다.

신당 조사와 더불어 가시리와 선흥1리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자원 및 제주 지역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마을만들기 사례집, 마을지, 마을 홈페이지 등 여러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소유관계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가시리와 선흥1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관련자 인터뷰를 수행했다.

2. 선행연구

공동자원(communs)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연구는 오스트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소유 방식을 중요하게 다뤘다.⁵⁾ 왜냐하면 공동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하딘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오스트롬 연구의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롬과 동료들 역시 중앙정부소유, 지방정부소유, 개인소유, 공동소유의 다양한 공동자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소유 방식이 공동자원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⁶⁾

이노우에는 일본의 공동자원을 둘러싼 소유 관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소유보다도 이용과 관리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⁷⁾ 야마시타는 관리 실태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본에서 소유 방식이 관리·이용의 실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⁸⁾ 예

5) 오스트롬, 엘리너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주)알에이치코리아, 2010.

6) Ostrom, Dietz, Dolsak, Stern, Stonich and Weber, *The Drama of the Commons*(Washington, DC:National Academy Press, 2002).

7) 이노우에 마코토, 앞의 책, 2014; 井上真, 『コモンズの思想を求めて-カリマンタンの森で考える』, 岩波書店, 2004.

8) 야마시타 우타코, 앞의 책, 2014.

를 들어 임야의 소유권을 가진 입회집단(공동자원 관리·이용자)과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입회집단 사이에는 공동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입회집단과 임야소유권자(개인, 기업 또는 정부) 사이에는 권리관계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현·김선필은 가시리가 마을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시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공동목장이라는 공동자원을 매각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⁹⁾ 반면에 최현은 선흥1리가 공동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 및 중앙정부와 적절한 협치체계를 수립해서 국공유지인 동백동산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동자원으로 활용해 마을만들기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선흥1리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동백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협치를 통해 확보했다. 선흥1리는 마을주민들의 합의 속에 동백동산을 생태관광을 위한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을의 민주적 발전과 생태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람사르 습지로 보호해야 할 “동백동산”을 마을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윤순진은 “소유권의 배분을 통해 공동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국가의 강제적 규제를 통해 공동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¹¹⁾ 오히려 사유화되어 상품이 된 공동자원이나 국유화되어 지역주민의 자치적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으로부터 유리된 공동자원은 지속가능성을 잃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자원에 의지해 살아가면서 공동자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자원을 관리할 때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잘 유지되었다. 공동자원에 대한 사유화나 국유화 등 소유 방식의 변경

9) 최현·김선필, 앞의 책, 2016, 267-295쪽.

10) 최현, 『선흥1리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ECO』 제19권 2호, 2017.

11) 윤순진, 『전통적인 공유지 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0(4), 2002.

만으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방식과 관리 방식(주체)을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²⁾

윤순진·차준희에 따르면 외지인에 의한 사유화된 공동자원은 지역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상호 합의된 상호 강제의 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동자원의 상품화는 공동자원을 훼손시킬 개연성을 높인다. 공동체의 약화와 붕괴를 가져오는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 역시 공동자원을 존속시킨 “상호 합의된 상호 강제”를 약화 내지 해체시켜 공동자원의 존속을 어렵게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용자-관리자 공동체가 공동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 때 공동자원 유지가 어려움을 보여준다.¹³⁾

김석윤·송정희·이재섭은 2008년 발행된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을 기본 자료로 선택하여 제주시 지역 신당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지도에서 주소 추산 후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2008년 당시의 소유관계를 파악했으며, 대표적인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의 마을 관계자 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의 신당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도출하였다. 제주의 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신당을 소유하고 관리했으나, 근대화 이후 급속도로 그 공동체적 의미를 상실하면서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⁴⁾

최현과 이재섭은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했지만 공동자원에 대한 소유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던 선흥1리와 가시리 사례를 비교한다. 선흥1리는 제주도와 중앙 정부가 소유한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마을만들기를 했으며, 가시리는 목장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목장을 기반으로 마을만들기를 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소유방식의 차이가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최현과 이재섭은 일반적으로 공동자원에 대한 마을의 안정적 소유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지만, 공동자원에 대한 마을의 소유권이

12) 위의 글, 49쪽.

13) 윤순진·차준희, 앞의 글, 2009, 144쪽.

14) 김석윤·송정희·이재섭, 『제주연구원 45: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 조사』, 제주연구원, 2017.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공동자원 관리주체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시리와 선홍1리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공동자원의 소유권을 마을이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이 이 소유권에서 배제되는 가시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이 충원될 수 없어 공동자원과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홍1리는 마을이 공동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새로 이주한 주민과 오래 거주한 주민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주민이 늘고 있다.¹⁵⁾

선홍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자원의 소유 방식이 공동자원의 관리와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가 관심사다. 여기서는 공동자원의 하나인 제주의 신당을 통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소유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제주시 신당의 소유 유형과 관리 상태

공동자원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자원으로 국제적으로 commons로 불린다. 근대 이전부터 제주를 비롯한 한국 전역에 공동자원이 산재해 있었고 근대화 이후 많은 공동자원이 사유화되었지만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현은 공동자원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당한 자원으로 정의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자원인 공동자원은 세계 도처에 인류역사와 함께 존재했다. 여기에는 토지처럼 경합성이 있는 공동관리자원(common pool resources)과 지식처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자원(public goods)이 포함된다. 이 두 개념은 공동자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현재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경합성이 있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공동관리자원은 체계적 관리가

15) Choe, Hyun, and Jaesup Lee, "A Comparative Study on Two Ways of Community Building with Different Commons Ownership Modes", 출판예정.

필요하다. 신당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합성을 가지는 공동자원으로 체계적 관리 없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¹⁶⁾

제주에 있는 신당들은 오랜 세월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의례의 장소로서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적 공동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종교적 의미는 약화되고 있지만, 공동의 의례와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자치의 공간으로 앞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08년 제주시 신당의 실태를 모두 조사해 작성한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에 수록된 제주시 192개소의 신당의 위치를 확인해서 하나하나 등기부등본으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의 소유 관계를 확인했다.¹⁷⁾ 조사에 따르면 192개소 중 개인 소유의 신당이 95개소, 국가 소유의 신당이 28개소,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교육청) 소유의 신당이 20개소, 마을(새마을회) 소유의 신당이 20개소, 기업 소유의 신당이 3개소,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할 수 없는 신당이 26개소(위치 확인 불가 10, 해변 10, 기타 6)로 나타났다. 주소나 등기가 없는 유형은 2008년 조사 때 잘못된 위치 정보를 입력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해변에 위치하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위치 정보가 잘못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조사한 곳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 관계를 파악해 기타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등기부등본 상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있었으나, 소유 유형(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기업 소유, 개인 소유, 기타)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¹⁸⁾ 따라서 소유 유형에 따라 관리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유 유형에 따라 신당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¹⁹⁾

16) 최현,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본다』, 진인진, 2017, 45-46쪽.

17)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도서출판 각, 2008.

18)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10년 간 소유 유형이 변동된 경우는 개인 소유에서 마을 소유로 바뀐 경우가 2건, 개인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바뀐 경우가 1건, 국가 소유가 지자체 소유로 바뀐 경우가 2건이 있었다. 2018년대 현재까지 소유유형의 변화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19) 김석윤·송정희·이재섭, 위의 책, 14-27쪽은 2008년을 기준으로 국가 27개, 지방 21개, 마을 21개, 기업 5개, 개인 92개로 나와 있으나 우리는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10년간의 소유 관계를 검토해서 <표 1>의 결과를 제시했다.

〈표 1〉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2008년 기준)

소유 유형	개소
국가	28
지방자치단체	20
마을	20
기업	3
개인	95
기타(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 관계 불명)	26
총계	192

1) 국가 소유

제주시 신당 전체 192개소 중 국가 소유로 나타난 신당은 28개소이다. 제주시 전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관리기관은 건설교통부 17개소와 기획재정부 9개소 그리고 남읍리 흥골당인 경우 산림청, 용담3동 다끄내 본향 궁당인 경우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당 부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목이 도로와 하천인 경우가 많아서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 폐당된 국가 소유의 신당은 총 4개소로 전체의 14.2%다.²⁰⁾ 이 중에 지목이 도로로 설정되어 있는 동김녕 궤네깃당은 도로 확장으로 멸실(滅失)될 위기에서 현재 유적지로 임시 지정이 되어 도로 확장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²¹⁾

그 외에 동북리 본향 굴목밭할망당의 경우도 당과 접하여 있는 도로가 편도 1차이고 현재 지목이 도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로 확장 등의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11개소의 지목이 도로로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하천, 잡종지, 임야, 학교 등이다.²²⁾

20) 등기 연도가 2008년 이후 인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나지만 등기목적의 모든 보존인 것을 보면 소유자가 변동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1) 신당이 더 이상 관리도 되지 않고, 주민도 찾지 않으면 폐당(閉堂)되었다고 하며, 완전히 사라지면 가실(滅失)되었다고 한다.

22) 김석윤·송정희·이재섭, 앞의 책, 30쪽.

〈표 2〉 28번 한림읍 한수리 대섬밭 하르방당인 경우는 2001년 등기 접수 당시 국가 소유로 잡종지였던 부동산이 2012년 한수리어촌계에서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 2014년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²³⁾

〈표 2〉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국가 소유 목록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2008)	관리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	구좌읍	동김녕 케네깃당	김녕리 2121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폐당	도로	대위자-제주도 (2009년)
2	구좌읍	한동 망애물 해신당	한동리 1387-2	2017	보존	국가	국토교통부		도로	
3	구좌읍	동북리 본향 굴묵밭할망당	동북리 1759	1990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4	구좌읍	하도리 각시당	하도리 450-3	2013	보존	국가	기재부		임야	
5	구좌읍	월정리 배롱개 해신당	월정리 774-4	2013	보존	국가	기재부		잡종지	
6	구좌읍	김녕 본향 사장빌레 큰당	김녕리 2121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대위자-제주도 (2009년)
7	애월읍	중엄리 본향 송씨일패당	신엄리 3208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8	애월읍	애월리 해신당	애월리 1819-44	2017	보존	국가	기재부		도로	
9	애월읍	남읍리 흥골당	어름리 산20	1969	보존	국가	산림청		임야	
10	제주시	오등동 본향 오드싱당	오등동 1895	1974	보존	국가	건설부		하천	
11	제주시	내도동 본향 웃당	내도동 456-13	1989	보존	국가	기재부		잡종지	
12	제주시	이호2동 본향 남당	내도동 895	1994	보존	국가	건설부		하천	
13	제주시	내도동 앞당	내도동 465-2	1989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14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해신당	용담3동 1064-7	1990	보존	국가	기재부		잡종지	
15	제주시	신사수동 본향 고랭이불당	도두2동 2610	1974	보존	국가	건설부		하천	
16	제주시	용강 본향 케당	용강동 1768	1974	보존	국가	건설부		하천	
17	제주시	용담2동 한두기 본향 고시락당	용담1동 2581-4	1998	보존	국가	건설교통부		하천	

23) 2008년 이후 국가 소유에서 마을 소유로 바뀐 신당이 1개소이고, 현재는 국가 소유가 27개소이다.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20 08)	관리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8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분향 공당	용담3동 581)	1968	보존	국가	교육부		학교	
19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신흥리 545-1	2017	보존	국가	기재부		도로	
20	조천읍	조천리 새곶할망당 (고망할망당)	조천리 2730-2	2008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21	조천읍	북촌리 동카름 칠머리당	북촌리 2688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폐당	도로	
22	한경면	금등리 분향 손드물 축일할망당	금등리 1008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도로	
23	한경면	저지리 용선도리 일뫼하르방당	조수리 4146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폐당	도로	
24	한경면	용수리 필낭 해신당	용수리 4136-3	2012	보존	국가	기재부	폐당	잡종지	
25	한림읍	귀덕 분향 축일할망당	귀덕리 1031-3	1988	보존	국가	건설부		잡종지	
26	한림읍	비양리 분향 술일당	협재리 산116-5	1988	보존	국가	기재부		유지	
27	한림읍	명월 박닛물 축일당	명월리 2223	1975	보존	국가	건설부		구거	
28	한림읍	한수리 대설밭 하르방당	한수리 914-13	2001	보존	국가	재정 경제부 (기재부)		잡종지	국가→ 마을 (2012년), 한수어 촌계

2) 지방자치단체 소유

제주시 신당 전체 192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나타난 신당은 20개소이다.²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13개소, 제주시 4개소, (구)북제주군 2개소, 제주도 교육감 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폐당된 지자체 소유 신당은 20개소 중 4개소로 20.0%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임야 주소에 신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즉 신당만 개별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신당을 포함한 토지가 어떠한 이유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신당도 같이 소유권이 변경되게 된다. 상

24) 2008년 이후 개인 소유에서 제주도 소유로 바뀐 신당이 2개소 있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22개소다.

도리 본향 막음질 일쇄할망당인 경우만 봐도 국세청-재무부-경찰청-북제주군-제주도 이 순서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이전된 사실을 보면 신당의 소유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임야 전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같이 변경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구)북제주군 소유로 되어있던 신당들이 대부분 제주도 혹은 제주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나 3개소만 북제주군 소유로 남아있다. 아직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안 된 것이다.²⁵⁾ 등기연도가 2008년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2008년 이후 행원리 본향 큰당과 하귀리 본향 돌크릿당이 개인 소유에서 제주도 소유로 변경되었다. 행원리는 교환으로 이전되었고 하귀리는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소유였던 셈이다.²⁶⁾ 그 외에 국가 소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넘어온 것이 2개소가 있다.

〈표 3〉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목록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2008)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	구좌읍	하도리 남당	하도리 1778	1965	이전	개인 (공동) + 제주도	폐당	전	하도리 거주(과거), 공유자(지분일부) - 제주도(2008년)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2	구좌읍	상도리 본향 막음질 일쇄할망당	상도리 202	1969		제주도		임야	국가(1969년)→경찰청(2001년)→북제주군(2006년)→제주도(2011년)
3	구좌읍	종달 본향 오막개당	종달리 70	1963	보존	제주도		임야	북제주군→제주도(2006년)
4	구좌읍	동김녕리 성세깃당	김녕리 571-2	2000	보존	제주도		임야	
5	구좌읍	월정 본향 서당머체 큰당	월정리 179-8	2007	이전	제주도		임야	
6	애월읍	고성리 동구시물 미끼왓당	광령리 3808-2	1983	이전	북제주군		도로	
7	애월읍	고내리 본향 큰당	고내리 1114	1969	보존	제주도		전	북제주군→제주도(2006년)

25) 2006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하였다.

26) 이 때문에 이 두 곳을 〈표 3〉에 넣지 않았다.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 -2008)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8	제주시	연동 본향 다량굿 막개낭당	연동 1955-5	1997	보존	제주시		대지	
9	제주시	삼양2동 본향 당갯할망당	삼양2동 2104-4	2002	보존	제주시		공원	
10	제주시	건입동 본향 산지 칠머리당	건입동 387-12	2000	이전	제주도	문화재	도로	제주시→ 제주도(2008년)
11	제주시	외도1동 본향 우랭이 돛당	외도1동 492-11	2002	보존	제주시		공원	
12	제주시	용담3동 어영연돛당	용담3동 2292-29	1990	보존	제주시		잡종지	국가(건설부-재무부) →경찰청→ 제주시(2003년)
13	제주시	이호1동 본향 붉은왕돌 할망당	이호1동 331	1987	이전	제주도		수도용 지	제주시→ 제주도(2008년)
14	조천읍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	함덕리 3155-2	1979	이전	북제주 군		도로	
15	조천읍	와산리 하르방당 베락당	와산리 694-1	1969	보존	제주도	폐당	잡종지	북제주군→제주도
16	조천읍	함덕리 쏘나니모루 일래당	함덕리 1698	1963	보존	제주도		임야	북제주군→ 제주도(2007년)
17	조천읍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신흥리 511-1	1969	보존	제주도	폐당	종교용 지	북제주군→ 제주도(2008년)
18	조천읍	신촌리 본향	신촌리 2257	2008	보존	제주도		대지	
19	한림읍	상명리 본향 느지리 케인틀 축일할망당	상명리 898	1996	보존	제주도		임야	북제주군→ 제주도(2006년)
20	한림읍	명월 본향 여드레할망당	용포리 777	1983	보존	제주도 교육감	폐당	학교용 지	학교 내 신당 위치

3) 마을 소유

제주시 신당 전체 192개소 중 마을 소유로 나타난 신당은 20개소이다. 이 중 소유자가 새마을회인 것이 9개소, 마을회인 것이 5개소, 어촌계인 것이 2개소, 공동목장조합인 것이 2개소다. 애월읍 금성리 축일할망당인 경우는 광지리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소유로 되어있고 제주시 화북동 본향 가릿당의 경우에는 화북1동 마을복지회가 소유자로 되어있다.²⁷⁾

소유자가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은 1970년대 마을 단위 조직에 새마을

회가 붙은 명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새마을회와 마을회는 같은 성격의 마을조직이다. 리 단위 마을 조직에서 신당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하도리 면수동 같은 경우는 마을의 행정동 단위로 신당이 존재하여 행정동 단위의 마을 조직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나타난다. 마을 소유인 경우는 등기 이후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마을과 개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신당은 3개소로 나타나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마을회에서 매매한 것이다.

마을 소유의 신당 중 3개소가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다. 구좌읍 송당리 본향 옷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제9-1호),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제9-2호),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제9-3호)이다. 3곳 모두 당굿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보존 상태도 매우 좋다. 신당에 매인 심방이 있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당굿을 진행하며 마을에서 소통의 장소, 축제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²⁹⁾

매우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믄루 소천국 하르방당은 폐당이 되었다가 2017년에 다시 복원이 되었다. 신당 장소가 하천과 가까이 있고 정비가 되지 않아 찾아갈 수조차 없는 곳이었으나 하천 재정비 공사를 하면서 당을 복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길에서 신당까지 진입로가 없어 마을 신앙민이 자신의 땅을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신당까지 길을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신당을 복원하였다. 이는 신당의 소유권이 마을에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7) 2008년 이후 국가 소유에서 마을 소유로 바뀐 신당이 1개소 있어 현재는 마을 소유는 21개소다.

28) 김석윤·송정희·이재철, 앞의 책, 33쪽.

29) 매인 심방은 제주도에서 신당에 매여 있는 무당을 말한다.

〈표 4〉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마을 소유 목록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 -2008)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하도리 3359-19	1984	이전	마을		건물/ 임야	하도리면수도 새마을회 소유
2	구좌읍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송당리 산 8-1	1996	이전	마을	폐당 → 복원	임야	송당리새마을회
3	구좌읍	송당리 본향 옷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송당리 산199-1	1996	이전	마을	문화재	임야	송당리새마을회, 대위자-제주특별자치도 /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4	애월읍	어음1리 본향 개나믄들 비메닛당	어음리 3708-2	1998	이전	마을		건물 / 창고용 지	개인(1998년)→ 마을(2001년 매매) 건물-어음1리새마을회
5	애월읍	금성리 축일할망당	곽지리 1565	1985	이전	마을		임야	토지:곽지리마을회 소유(대위-제주도), 건물:근린공원 (소유-제주도)
6	애월읍	구엄리 본향 모간빌레 송씨할망당	구엄리 833-1	1995	이전	마을		잡종지	구엄리새마을회 (2001년 매매)
7	애월읍	광령1리 본향 자운당	광령리 36-6	2000	이전	마을		잡종지	개인→마을(2001년) 광령1리새마을회
8	애월읍	하귀리 해신당	하귀2리 2729	1992	이전	마을		대지	귀일어촌계(애월읍 하귀리)
9	애월읍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하가리 846-1	1994	이전	마을		임야	하가리새마을회
10	애월읍	곽지리 송씨 일췌할망당	곽지리 1026	1995	이전	개인+ 마을		전	곽지리새마을영농 조합법인(2004년)
11	애월읍	상귀리 본향 황다리케당	유수암리 1913	1971	이전	마을		체육용 리	유수암리공동목장조합
12	애월읍	광령리 마씨 미륵당	광령리 596	1971	보존	개인 (공동) + 마을		목장용 지	1/2지분 광령공동목장조합 (1996년)
13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회천동 1058	2007	보존	마을	문화재	임야	동회천마을회
14	제주시	화북동 본향 가릿당	화북동 1888	1995	이전	마을		잡종지	제주시화북1동동마을복 지회
15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와흘리 1274-1	1990	이전	마을	문화재	임야	와흘리새마을회
16	추자면	예초리 당목쟁이 물생이끝당	예초리 산7	1996	이전	마을		임야	추자면에초리마을회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 -2008)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7	추자면	목리 당목치동산 치녀당	목리 731-5	1989	보존	마을		임야	국가(건설부-재무부)→ 북제주군→목리새마을회 (1992년)
18	한림읍	금능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금능리 1631	1981	보존	마을		임야	금능리마을회, 대위자-제주도(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위한)
19	한림읍	금릉 본향 언덧가름 영감당	금능리 1631	1981	보존	마을		임야	금능리마을회, 대위자-제주도(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위한)
20	한림읍	협재리 뒷당	협재리 1458	1989	보존	개인+ 마을		전	건물:협재어촌계 (잠수탈의장) 토지: 개인 소유

4) 기업 소유

2008년 제주시 신당 전체 192개소 중 기업 소유로 나타난 신당은 3개소다 (<표 5> 참조). 기업 소재지가 제주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언제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교래리 누룩남도 일뤼당은 유원지 내에 신당이 있어 그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신앙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폐당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기업 소유 신당의 33.3%가 폐당됐다.

2008년 기준으로는 3개소가 기업 소유였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5개 신당이 기업 소유다. 한경면 낙천리 본향 소록낭모들 오일하르방당과 조천읍 함덕리 스지믈르 일뤼당이 2008년 이후 기업 소유가 됐다.³⁰⁾ 한경면 낙천리 본향 소록낭모들 오일하르방당은 개인 공동 소유였고 소유자가 제주시 거주자였다. 지목은 잡종지였다. 2012년 매매로 기업(에이치○○주식회사)에게 팔렸다. 기업 소재지는 충청북도였다. 조천읍 함덕리 스지믈르 일뤼당의 경우는 개인 소유였고 소유자가 제주시 거주자였다. 지목은 전였다. 반복적인

30) 2008년 이후 개인 소유에서 기업 소유로 바뀐 신당이 2개소 있고 그 중 1개가 멸실되어 현재는 기업 소유는 4개소다.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2014년 기업(퍼스트○○주식회사)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고 2016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호텔건축으로 2017년 신당이 멸실되었다.

〈표 5〉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기업 소유 목록

No.	지역	신당명	주소	최초 등기 연도	등기 목적	소유자 (1998 -2008)	상태 (2008년 기준)	지목	비고
1	조천읍	교래리 누룩남도 일뿔당	교래리 산 56-4	1997	이전	기업	폐당	유원지	제주미니미니랜드 근저당설정
2	제주시	오등동 죽성 분향 설새밋당	오등동 305-18	2015	이전	기업		임야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이제이제이
3	구좌읍	하덕천리 웃산전 사라홀당	덕천리 산 49-3	2005	이전	기업		임야	주식회사 나이콤(경기도 소재) / 지상권설정

5) 개인 소유

제주시 신당 전체 192개소 중 개인 소유로 나타난 신당은 95개소로 전체 약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기록으로 등기 시작부터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상속과 증여, 매매로 되어있다. 매매가 되고 상속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 후 매매,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매우 복잡한 양상이 보인다. 매매는 2000년 이후 매우 활발히 나타난다. 매매가 예약된 경우도 있다. 개인 소유 중에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19개소이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 소유자 거주지가 신당이 속한 마을이 아닌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우선 개인 소유인 경우와 공동 소유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인소유는 79개소이고, 공동 소유는 16개소로 나타나는데 공동 소유인 경우 대부분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공동 소유 일원 중 한명이라도 소유지분을 팔게 되면 공동 소유관계가 복잡해진다

다. 상속자들 간의 거래도 많이 보인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도 많다. 금융기관에 의해 강제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 거주지로 유형을 분석해 보면 ① 소유자가 신당이 속한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51개소, ② 소유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25개소, ③ 소유자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9개소다. ①의 경우는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가 많지만 공동 소유인 경우는 8개소이며, 나머지는 상속자가 1인인 경우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마을 주민인가 마을 주민이 아닌가에 따라 신당의 관리에 큰 차이가 있었다. 개인 소유인 경우 폐당된 신당은 전체 95개소 중 12개소로 약 12% 정도였지만, 이 중에 마을 주민이 소유한 ①의 경우 약 5.5%만이 폐당됐다. 하지만 외부인이 소유한 41개 중에 10개소, 약 25%가 폐당됐다. 특이한 것은 ② 소유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34.8%로 ③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경우 11.1%보다도 높았다는 것이다.

〈표 6〉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개인 소유 유형

개인 소유 유형	개소
마을 거주	54(3개 폐당)
제주도 거주	23(8개 폐당)
제주도 이외 지역 거주	18(2개 폐당)
총계	95

6) 기타

『제주신당조사 2008 - 제주시권』의 위치 자료를 토대로 다음 지도에서 주소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바다 한 복판을 가리키거나 전혀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 소재지가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를 가리키는 경우이거나 해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이든 최대한 동원하여 장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찾은 경우는 모두 조사하여 소유권을 분류하였으나 조

천읍 신촌리 일뤼당, 조천읍 신촌리 동동네, 한림읍 금악리 아미당, 한경면 신창리 돈짓당, 우도면 상하고수동 성창봉오지 돈짓당, 추자면 대서리 장군당, 추자면 대서리 당너머 고삿바위, 추자면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 추자면 횡간도 마을 성황당 이렇게 10개소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해변인 경우이다. 해변에 있는 신당의 경우 다음 지도로도 쉽게 신당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신당은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변에 간척지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변인 경우는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간척지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보존녹지인 경우도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고 토지대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알 수가 없었다. 혹은 폐쇄등기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모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을 알 수 없었다.

〈표 7〉 기타 유형 분석

기타 유형	개소
GPS오류	10
해변	10
기타(등기없음 외)	6
총계	26

〈표 8〉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마을이나 마을 주민이 신당 부지를 소유한 경우나 신당의 지속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마을 외부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소유 신당은 33%가 폐당이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신당들도 개인이 소유한 신당과 마찬가지로 15-20% 가량 문을 닫거나 멸실됐다는 것이다.

〈표 8〉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

소유 유형	개소		폐당율(%)
국가	28		14.2
지방자치단체	20		20.0
마을	20		0.0
기업	3		33.3
개인 ³¹⁾	전체	95	13.7
	(외부인 소유)	(41)	(24.3)
기타(해변, 오류)	26		
총계	192		

4. 맺음말

제주에는 다양한 신당들이 존재한다. 이런 신당들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의례의 장소로서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공동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소통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치활동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자원이 사유화되면서 택지와 리조트 부지 등으로 팔려나가고 결국 파괴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인 신당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신당이라는 공동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신당의 소유권에 대해 조사는 체계적 관리·보존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우선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주시에 소재한 신당의 소유 관계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개인 소유 95개소, 국가 소유 28개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20개소, 마을 소유의 20개소, 기업 소유의 3개소, 주소가 없거나 등기가 없는 신당이 26개소를 확인했다. 국가 소유는 28개소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 지목은 도로가 다수이고, 그 밖에 하천, 임야, 학교 등이

31) 2008년 기준 개인 소유인 경우 95개소 중 13개소 폐당이였다. 현재 폐당된 신당 중 1개소가 멸실되었다. 멸실된 신당은 2014년 기업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호텔 건축으로 멸실된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20개소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하며, 지목은 도로, 임야, 잡종지, 종교용지, 공원, 전, 수도용지 등이다. 기업 소유의 신당은 3개소로 유원지 조성으로 폐당을 넘어 멸실된 경우도 있었다. 기업 소유의 경우 마을에서 신당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의 신당은 95개소로 소유자가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마을 밖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이 소유권을 가진 신당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지목은 임야가 많았다. 주소나 등기가 없는 신당은 해변, 천변에 위치해 주소가 없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위치정보 오류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현장조사를 통해 신당 보존 및 관리 주체는 크게 마을, 어촌계, 심방 등으로 볼 수 있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재돌봄사업단(제주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리의 주체는 마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신당이 마을 공동자원으로 자연스럽게 관리되어 왔다. 따라서 마을이 신당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실제로 마을 소유 신당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100% 살아남았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불과 10년 만에 국가소유, 지방자치단체소유 신당은 약 15~20%, 기업소유 신당은 33.3%, 개인소유 신당은 13.7%(특히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 소유 신당은 약 25%)가 폐당됐다. 하딘은 “공동자원의 비극”에서 정부 또는 개인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여진다.³²⁾ 하지만 제주시 신당의 사례는 이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다. 곧 주민들의 공동관리가 신당이라는 공동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당의 관리를 마을이 담당하고 그 소유 주체 역시 마을인 경우가 신당 관리(운영 및 보전)의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보인다. 제주 신당이

32)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pp.1243-1248.

가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당의 토지 중에서 마을에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신당들을 마을의 소유로 만들어 소유와 관리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공동자원, 소유권, 지속가능성, 제주도, 신당, 공동체, 정책

■ 참고문헌

- 김석윤·송정희·이재섭, 『제주연구원 45: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 조사』, 제주연구원, 2017.
- 아미사타 우타코, 『소유형태로부터 본 입회임야의 현상』,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 오스트롬, 엘리너 지음, 윤희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주)알에이치코리아, 2010.
- 윤순진, 『전통적인 공유지 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 - 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0(4), 2002.
- 윤순진·차준희,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사회』 19(2), 2009.
-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 이노우에 마코토, 『공동자원론의 유산과 전개』,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2008 - 제주시권』, 도서출판 각, 2008.
- 최현,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경제와 사회』 98, 2013.
- _____, 『선홀1리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ECO』 제19권 2호, 2017.
- _____,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2017.
- 최현·김선필,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공간과사회』 26(4), 2016.
-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1: 땅, 물, 바람』, 진인진, 2016.
- _____, 『공동자원의 섬 제주2: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진인진, 2016.
- Choe, Hyun, and Jaesup Lee, "A Comparative Study on Two Ways of Community Building with Different Commons Ownership Modes", 출판예정.
-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pp.1243-1248.

Ostrom, Dietz, Dolsak, Stern, Stonich and Weber, The Drama of the Commons(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2).

井上真, 『コモンズ思想を求めて-カリマンタンの森で考える』, 岩波書店, 2004.

<기사>

홍석준, 『1만8000 신들의 고향 제주, “그 신들은 다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제주』, 2016.05.23.(검색일 2017.05.2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다음지도 <http://map.daum.net/>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정부 민원24시 <https://www.gov.kr/portal/main#none> (토지대장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u.go.kr/culture/index.htm>



Ownership of Shamanic Shrines and their Maintenance in Jeju City

Song, Jeongheui · Choe, Hyu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 (Prof. Jeju National Univ)

This study identifies the ownership, locations and maintenances of 192 shrine sites in Jeju, which was found in 2008. Among these, 95 shrine sites belong to individuals, 28 sites are owned by the government, 20 owned by a loc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City, Bukjeju County), 20 owned by villages, 3 owned enterprises. 26 sites were unable to have their addresses verified or were not listed in the Corporation Register.

The study shows that most of shrines owned by villages are well managed and maintained. However, about 20% of shrines whose ownership belongs t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ompanies, or individuals are vandalized or destroyed. This study, thus, suggests that villages should own the lands of shrine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of shrines in Jeju. It also suggest tha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ownership of shrine in the entire Jeju island.

[Key words]

commons, sustainability, Jeju-si, shamanic shrine, ownership, community, policy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22일 / 논문수정일: 2018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5일